

2021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시행 계획

2021.07.12.
교육과정센터

1. 기본 방침

- 1) 정규 수업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과 차원에서 협의하여 개설한다.
- 2) 강좌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맞는 것만 개설한다.
- 3) 융합적 성격을 띤 강좌의 경우에는 복수의 교사가 참여하여 강좌의 수준과 질을 보장한다.
- 4) 방과후학교 수강 유무가 정규 수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(선행학습도 불가), 학습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.
- 5) 교사 1명이 1주일에 할 수 있는 최대 시수는 2차시(1차시당 80분)이다.
- 6) 교사 등교 상황에 대비하여 학년별 강좌 중심으로 운영한다.
- 7) 강좌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방과후수업의 강좌 수준, 내용, 학습 방법 등을 안내한다.
- 8) 쿼터제와 학기제를 혼합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. 방과후학교 강좌는 다음과 같이 6가지 특성을 갖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강좌 특성	내용
보충	정규수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 강좌(수업 support 성격)와 심도 있는 강좌
탐구연구	어떤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연구하는 강좌
통합사고논술	종합적, 분석적 사고를 토대로 한 글쓰기 강좌
재능개발	예·체능 계열의 강좌, 교양 강좌
국제 분야	해외 대학 진학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강좌
1인 1기	1인 1기 강좌

- 9) 강좌 유형별 개설 최소 인원 및 분반 기준 인원은 다음과 같다. (단, 수강신청 마지막 날 기준으로 강좌 신청인원이 개설 최소 인원의 80% 미만이면 강좌 개설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5명 이상이 수강을 원할 경우엔 개설 최소 인원의 강사비 및 수용비를 각 수강생이 분할하여 추가로 납부한다.

강좌 유형	강좌 특성	개설 최소 인원	표준 개설 인원
일반·심화	보충, 탐구연구, 국제 분야, 재능개발,	13	20
	1인 1기	9	15
실습	통합사고논술		
침삭	통합사고논술		

* 침삭: 대면/지필 침삭(30분/1인, 1회)×2회

- 10) 필요시 교육과정센터와 협의하여 수업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11) 외부 강사를 모집 후 위탁하여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- 12) 절차
 - (1) 학년부 요청, 교육과정 운영, 학생 요구를 바탕으로 학과에서 개설 신청한다.
 - (2) 신청한 강좌는 교육과정센터의 승인을 받는다.
 - (3) 강좌 개설과 운영은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.

13) 보강이 불가피 할 경우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ET시간을 활용하여 보강수업을 진행한다.

2. 일정

가. 기간 :	3Quarter	2021. 08. 19.(목) ~ 09. 29.(수)
	4Quarter	2021. 10. 20.(수) ~ 12. 16.(목)
	학기제	2021. 08. 19.(목) ~ 12. 15.(수)
	1인 1기	2021. 08. 23.(월) ~ 12. 15.(수)

학년	비고	구분	교시	요일	차시		시간(1회당)
					3Q	4Q	
1, 2	쿼터제	평일	ET	월화/월목/화수/화목/수목	10	14	80분
				월화수/월화목/월수목/화수목	15	X	
월/화/수/목	12						
월화/월목/화수/화목/수목	25						
1, 2	학기제			월/수/금	12		

나. 세부일정

1, 2, 3학년 방과후학교				
월	화	수	목	
			8/19	● 행사 및 일정 8/18: 디플로마교육 9/1 9월 전국연합평가(1,2) 및 모의평가 (3) 9/20~9/22 추석 10/4 대체공휴일 10/5~10/8 1회고사준비기간 10/11 대체공휴일 10/12 10월 전국연합평가(3) 10/13~10/15 1회고사 10/27~10/28 학술제 11/18 PAP S측정(1,2) 22학년도 수능(3) 11/24 11월 전국연합평가(1,2) 11/25~11/30 2회고사(3) 12/20~12/29 2회고사준비기간(1,2) 12/30~1/5 2회고사(1,2) 1/5~동계방학 ● 귀가일 9/17 10/8 11/5 12/3 12/24 1/4 □ : 방과후학교 실시 ■ : 방과후학교 미실시
			8/26	
8/23	8/24	8/25	8/26	
8/30	8/31	9월 학평(1,2) 모평(3)	9/2	
9/6	9/7	9/8	9/9	
9/13	9/14	9/15	9/16	
		추석	9/23	
9/27	9/28	9/29	9/30	
대체공휴일	1회고사준비기간			
대체공휴일	1회고사준비기간	1회고사 (10/13~10/15)		
		10/20	10/21	
10/25	10/26	학술제 (2)		
11/1	11/2	11/3	11/4	
11/8	11/9	11/10	11/11	
11/15	11/16	감독관 소집일	PAPS 측정 (1,2) 2022 수능 (3)	
11/22	11/23	11/24 11월 학평 (1,2)	11/25 2회고사 (3)	
11/29 2회고사 (3)	11/30 2회고사 (3)	12/1	12/2	
12/6	12/7	12/8	12/9	
12/13	12/14	12/15	12/16	
		2회고사 준비기간 (1,2)		
		2회고사 (1,2)		

1,2학년 1인기		
월(1인1기)	수(1인1기)	금(1인1기)
㉠ 8/23	㉠ 8/25	㉠ 8/27
㉡ 8/30	㉡ 9/1	㉡ 9/3
㉢ 9/6	㉢ 9/8	㉢ 9/10
㉣ 9/13	㉣ 9/15	㉣ 9/17
추석		
㉤ 9/27	㉤ 9/29	㉤ 10/1
1회고사 준비기간		
	㉥ 10/20	㉥ 10/22
㉦ 10/25	학술제	㉦ 10/29
㉧ 11/1	㉧ 11/3	㉧ 11/5
㉨ 11/8	㉨ 11/10	㉨ 11/12
㉩ 11/15	수능감독관 소집일	㉩ 11/19
㉪ 11/22	㉪ 11/24	㉪ 11/26
㉫ 11/29	㉫ 12/1	㉫ 12/3
㉬ 12/6	㉬ 12/8	㉬ 12/10
㉭ 12/13	㉭ 12/15	㉭ 12/17

● 행사 및 일정
9/1 9월 전국연합평가(1,2,3)
9/20~9/22 추석
9/27 ~10/4 1회고사준비기간
10/5 ~10/7 1회고사
10/27~10/28 학술제
11/18 PAPS측정(1,2)
22학년도 수능(3)

11/24 11월 전국연합평가(1,2)
11/25~11/30 2회고사(3)
12/14~12/21 2회고사준비기간
12/22~12/24 2회고사(1,2)
12/27~ 등계방학

● 귀가일
9/3(2),
9/17(2,3)
10/8(1,2,3)
11/5(2,3)
12/2(2,3)
12/24(1,2,3)

㉰ : 스페어

3. 추진 계획

■ 방과후학교 추진계획 세부일정

1,2,3학년	1,2학년	내용
3Q/학기제	4Q	
7/14(수)	9/23(목)	학년별 방과후학교 과목개설희망서 배포
7/19(월)	9/29(수)	학년별 방과후학교 과목개설희망서 취합 & 수업계획서 학과 배포
8/10(화)	10/6(수)	학과별 방과후학교 계획서 수합 제출
8/10(화)~8/11(수)	10/7(목) ~ 10/8(금)	개설 강좌 목록 공지(큰사넛)
8/17(화)	10/18(월)	수강 신청(종례시간)
8/19(목)	10/20(수)	강좌 실시

■ 1인 1기

1,2학년	내용
7/21(수)	1인1기 변경 학생 명단 제출
7/26(월) ~ 7/28(수)	1학기 1,2학년 1인1기 큰사넛 센터 입력
8/20(금)	강좌 실시

4. 과금 체계

- 1) A, B, C, D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수강생 수로 분할한다.
- 2) 5명 이상이 수강할 경우엔 개설 최소 인원의 강사비 및 수용비를 각 수강생이 분할하여 추가로 납부한다.

$$\text{수강비} = \{\text{강사비} + \text{수용비}(\text{수익자부담금의 } 5\%)\} \div \text{유형별 수강생 수}$$

구분	강좌 특성	강좌 유형	강사비+수용비	추가비	근거	비고
A	보충 탐구연구 국제 분야	일반·심화	○	-		
B	보충 탐구연구 통합사고논술 국제(IB)분야	실습	○	2.5만/1인	실험재료	학교 귀속
		첨삭	○	2.5만/1인		
C	재능개발	실습	○	-		
D	1인 1기	실습	○	-		

- 3) 서명록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해당 차시에 대한 강사료는 당월에 지급되지 않으며, 서명 확인 후 차월에 지급한다.

4) 수강료

구분	10분 기준
평일	11,000원
주말, 방학	12,000원
국제 교과	16,000원

5.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급 프로세스(2020. 3. 1. 시행)

가. 배경 및 원칙

- 강사료(외부강사)는 생계를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[**관련근거: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**]
- 회계는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」에 따르며,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 *** 수익자 부담 원칙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결정**

나. 업무처리 흐름도

단 계	주요 내용	일 자
교육과정센터 (기타 관련부서)	○ 전월 이행의 전망[수업시수(지출예정 내역)] 및 증빙자료 제출	수업한 그 달 말일까지
↓		
행정실	○ 강사료 산출작업 및 지출서류준비(제출자료 검증) ○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상신(개인 지급대장 확인)	수업한 다음 달 3일까지
↓		
지급처리	○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임금처리	수업한 다음 달 10일까지

※ 여름방학, 특강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세스 일자 적용

다. 기타

□ 외부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별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

※ 소득세 원천징수

- 외부강사의 경우 : 사업소득세

- 법적근거 : 「소득세법」 제19조, 제127조, 제129조,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
- 대상소득 :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
- 원천징수세율 : 소득세(3%) +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